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2851
----------	------

2021년 12월 17일
보건복지위원회

I. 심사경과

1.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1년 10월 15일 김경영 의원외 9명
2. 회부일자 : 2021년 10월 20일
3. 상정일자 : 제303회 정례회 제10차 보건복지위원회

【2021년 12월 17일 상정·의결(원안 가결)】

II. 제안설명의 요지 (김경영 의원)

1. 제안이유

-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족복귀 조치로 재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호조치·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시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신설).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신·구조문 대비표 참조

Ⅲ.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1 조례안의 개요

- 동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아동복지법상 보호조치 및 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보호대상아동이 보호조치 전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심의를 통해 보호조치 결정 등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주요사항 검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안 제3조)

- 개정안(안 제3조)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을 기존의 10명 이내에서 15명 이내로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였음.
- 또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보다 근거 법령을 명시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추가로 자치경찰과 아동복지학·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을 각각 1명 이상 포함하여 구성하도록 하였음.¹⁾

1) 붙임1로 현행조례/개정안/법시행령 3단표를 첨부하였음.

- 이는 아동학대 조사체계를 공공 중심으로 개편하기 위해 지난 2020년 9월에 개정된 「아동복지법 시행령」[시행 2020. 10. 1.] [대통령령 제31068호, 2020. 9. 29., 일부개정]의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의사·법조인·교사 등 아동보호 전문인력의 참여를 필수화함으로써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법」제116조의2²⁾ 및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조례에 그 근거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아동복지법」제12조제3항에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례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3조의2 신설)

- 개정안은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보호대상 아동의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현행조례 제3조제2호), ▲ 보호대상 아동의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현행조례 제3조제3호) ▲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신고 청구에 관한 사항(현행조례 제3조제4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법」제116조의2(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에서 법령이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현행조례 제3조제5호), ▲지원대상 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현행조례 제3조제6호),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현행조례 제3조제8호)에 대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대신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	개정안
<p><u><신설></u></p>	<p><u>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u></p>

- 이는 개정된 「아동복지법」[시행 2021. 3.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을 반영하여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임.

아동복지법

[시행 2021. 3. 30.] [법률 제17784호, 2020. 12. 29., 일부개정]

제12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 ①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그 소속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둔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개정 2020.12.29>

1. 제8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에 관한 사항
3. 제16조에 따른 퇴소조치에 관한 사항
4. 제18조에 따른 친권행사의 제한이나 친권상실 선고 청구에 관한 사항
5.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의 선임이나 변경 청구에 관한 사항
6. 지원대상아동의 선정과 그 지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아동의 보호 및 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현황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7.9.19>

- 현행 아동복지심의위원회가 아동정책 전반에 대한 심의기능을

포함하기 때문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아동사례에 대해 심의하기에는 부적합한 면이 있고, 또한 지자체장 및 유관 기관장 중심으로 구성되어 보호대상아동 발생시 수시 개최를 통한 보호조치 사전심의가 곤란한 바,

- 보호대상아동 발생 시 신속하고 적시성 있게 아동보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아동 보호조치·퇴소조치 시에 심의를 의무화한 것임.
- 개정안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에 따라 사례결정위원회의 규모 및 위원의 구성(안 제3조의2제2~3항),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안 제3조의2제4항)에 대해 아래의 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음.

개 정 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p>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p>	<p>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사례결정위원회(이하 “사례결정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위</p>

개 정 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p>③ <u>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 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④ <u>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u></p>	<p><u>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u>1. 시·도 사례결정위원회: 시·도 소속 4급 이상 공무원</u></p> <p><u>2. 시·군·구 사례결정위원회: 시·군·구 소속 5급 이상 공무원</u></p> <p>③ <u>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13조제4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u></p> <p>④ <u>사례결정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u></p> <p>⑤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례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정한다.</u></p>

□ 그 외 사항

- 개정안(안 제10조)은 아동복지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고 있는 간사의 명칭을 아동청소년담당관에서 가족담당관으로 변경하였는데, 이는 아동복지 담당 부서장의 명칭을 서울시 조직 체계에 맞춰 현행화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p>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시 <u>아동청소년담당관</u>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p> <p>② (생략)</p>	<p>제10조(간사 등) ① ----- ----- ----- -- <u>가족담당관</u>----- ----- -----.</p> <p>② (현행과 같음)</p>

-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은, 어려운 용어를 쉬운 말로 풀어쓰고 간결하게 다듬어 자치법규에 대하여 시민이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므로, 그 입법취지의 긍정성이 크고, 이에 따른 개정내용도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조항별 신·구 대비표〉

조항 구분	현행	개정안
제3조 제3항	~ <u>자와</u>	~ <u>사람과</u>
	~ <u>자로</u>	~ <u>사람으로</u>
	~ <u>한 명</u>	~ <u>1명</u>
	~ <u>하였던</u>	~ <u>담당했던</u>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및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지심의위원회를 확대하고 위원회 산하에 사례결정위원회를 신설하고 운영하는 것과 관련된 내용으로, 아동복지심의위원회는 아동정책 전반적 사항에 대한 심의기구로 개편하고, 아동보호 관련 전문적 사항은 적시에 수시로 심의하기 위해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는 것으로, 서울시 아동의 적극적 보호를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 다만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라 지난 2021년 7월 9일에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 사례결정위원회가 2021년 7월 9일에 기구구성되었으나, 대부분의 심의 건이 자치구에서 다뤄지고 있어 현재까지 서울시에서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은 바, 현행 「아동복지법」에서 동일하게 규정된 서울시와 자치구 사례결정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에 대한 분리·조정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안 제3조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관련 3단표

현 행	개 정 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p>제2조(구성) ①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이 경우 제1</p>	<p>제3조(위원회의 구성)</p> <p>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 사람과 ----- ----- 사람 -----</p>	<p>제13조(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p>

현행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p>호부터 <u>제4호까지</u>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u>한 명 이상</u> 포함되어야 한다.</p>	<p>-----. ----- <u>제7호까지</u>----- ----- 1 <u>명</u> ----- -----.</p>	
<p>1. <u>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u></p>	<p>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u>유아교육법</u>」 제22조 또는 「<u>초·중등교육법</u>」 제21조에 따른 <u>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u> 나. <u>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u></p>	<p>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가. 「<u>유아교육법</u>」 제22조 또는 「<u>초·중등교육법</u>」 제21조에 따른 <u>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u> 나. <u>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u></p>

현행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p>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신설></p> <p>3.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p> <p><신설></p>	<p>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안 동 분야에 관한 - ----- --</p> <p>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4. ----- ----- ----- ----- ----- 아동 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 ----- ----- 담당했 던 -----</p> <p>5. 「국가공무원</p>	<p>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 안 동 분야에 관한 - ----- --</p> <p>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p> <p>4. ----- ----- ----- ----- ----- 아동 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 ----- ----- 담당했 던 -----</p> <p>5. 「국가공무원</p>

현행	개정안	아동복지법 시행령
<p data-bbox="252 1196 421 1236"><신설></p> <p data-bbox="252 1435 440 1476">4. (생략)</p>	<p data-bbox="679 273 986 981"><u>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 data-bbox="651 994 986 1541">6. <u>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 data-bbox="651 1435 986 1541">7. (현행 제4호와 같음)</p>	<p data-bbox="1082 273 1388 981"><u>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 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 data-bbox="1050 994 1388 1809">6. <u>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u></p> <p data-bbox="1050 1435 1388 1809">7. 그 밖에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동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p>

사례결정위원회 구성·운영 개요

- **근 거**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1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 **역 할**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산하에 현장 전문가 중심으로 아동의 보호조치 및 퇴소조치를 심의(법 시행 6.30)
- 아동복지심의위원회 및 사례결정위원회 역할 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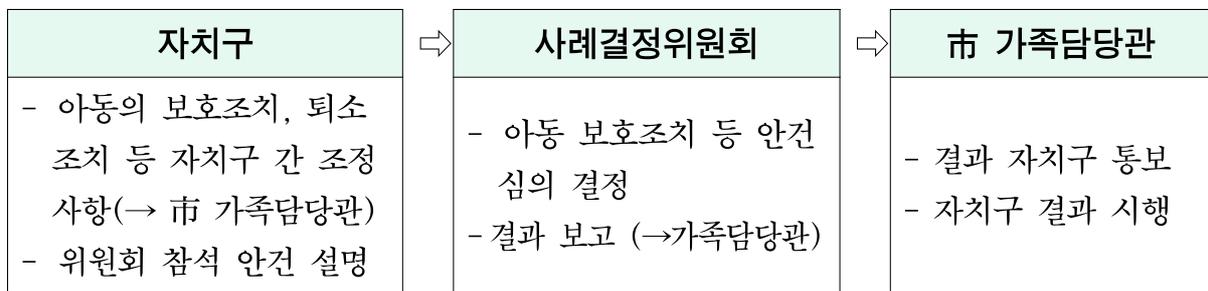
구분	서울시	자치구
아동복지심의위원회	市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자치구 아동정책 시행계획 등 아동정책 심의
사례결정위원회	아동의 보호 관련 자치구 간 조정 사항 심의	아동의 보호조치, 퇴소조치, 친권 제한 및 후견인 선임 등 심의

- **위원구성** : 7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필수 위원 포함 사안별 구성)
 - 필수 위원 : 5명 (위원장, 법률, 의학, 복지시설 단체, 경찰 분야)
 - 사안별 참여 위원 : 2명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중 학계 전문가 5명 순환 참여)
- **위원 현황**

연번	구분	참여여부	분야	성명	성별	직 위	임기	비고
1	당연직	필수	내부위원	송준서	남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재임기간	위원장
2	위촉직	필수	법률	소라미	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법학 교수	2년	
3	"	필수	의학	손용규	남	지에프 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	
4	"	필수	복지시설 단체	신혜령	여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	
5	"	필수	경찰 공무원	하동진	남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	
6	"	사안별 순환참여	학계 등	공마리아	여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	
7	"	사안별 순환참여	"	김형모	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연번	구분	참여여부	분야	성명	성별	직 위	임기	비고
8	"	사안별 순환참여	"	노혜련	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9	"	사안별 순환참여	"	정익중	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0	"	사안별 순환참여	"	황옥경	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 **운 영** : 필요시(수시)



서울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위원회 구성

(2021. 7.)

연번	구분	분야	성명	성별	직 위	임기	비고
1	당연직	내부위원	오세훈	남	서울특별시장	재임기간	위원장
2	"	"	김기현 (代)	남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	부위원장
3	"	내부위원 (신규위촉)	송준서	남	서울특별시 가족담당관	"	
4	위촉직	공공기관 (교육청)	고효선	여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장	2년	교육청 추천
5	"	법률	소라미	여	서울대학교 법학전문 대학원 임상법학 교수	"	
6	"	복지시설 단체	신혜령	여	한국아동복지학회 이사	"	
7	"	학계 등	공마리아	여	대구대학교 재활심리학과 교수	"	장애인 재단 추천
8	"	"	김형모	남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9	"	"	노혜련	여	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	
10	"	"	정익중	남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11	"	"	황옥경	여	서울신학대학교 보육학과 교수	"	
12	"	의학 (신규위촉)	손용규	남	지에프소아청소년과 의원 원장	"	서울시의 사회 추천
13	"	경찰공무원 (신규위촉)	하동진	남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계장	"	서울경찰 청 추천

IV.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V. 토론요지 : 「없음」

VI. 심사결과 : 원안 가결

VII. 소수의견 요지 : 「없음」

VIII.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경영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2851
----------	------

발 의 년 월 일 : 2021년 10월 15일
발 의 자 : 김경영, 권수정, 김경우,
김생환, 김제리, 김화숙,
문병훈, 박기재, 이영실,
조상호 의원(10명)

1. 제안이유

- 아동학대로 인한 보호아동에 대한 원가족복귀 조치로 재학대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보호조치·보호조치를 종료하거나, 보호대상아동을 가정으로 복귀시키려는 경우에는 사례결정위원회 심의를 의무화하여 보호조치 결정을 전문적·적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임.

2. 주요내용

- 가. 시장이 아동복지심의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함(안 제3조의2).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및 같은법 시행령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기타 : 신·구조문대비표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로 한다.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제3조와 제2조로 한다.

제2조(중전의 제3조)의 제목 “기능”을 “위원회의 기능”으로 하며,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의 제목 “구성”을 “위원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제3조(중전의 제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자와”를 “사람과”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4호까지”

를 “제7호까지”로, “한 명”을 “1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를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로, “아동분야에”를 “아동 분야에 관한”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4호(종전의 제3호) 중 “아동분야”를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로, “하였던”을 “담당했던”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아동청소년담당관”을 “가족담당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12조 및 <u>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2조(구성) ① <u>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한 명 및 부위원장 한 명을 포함하여 열 명 이내로 구성한다.</u></p> <p>② (생략)</p> <p>③ 위원은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u>자와</u>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u>자로</u>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u>제4호까지</u>에 해당하는 위원이 각각 <u>한 명 이상</u> 포함되어야 한다.</p> <p>1. <u>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하</u></p>	<p>제1조(목적) ----- ----- <u>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3조의2</u>----- ----- ----- -----.</p>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u>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 ----- ----- <u>사람과</u> ----- ----- <u>사람으로</u> ----- ----- ----- <u>제7호까지</u>----- ----- <u>1명</u> ----- -----.</p> <p>1. <u>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u> <u>가. 「유아교육법」 제22조 또는 「초·중등교육법」 제21</u></p>

있던 사람

2. 변호사, 의사 또는 교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신 설>

3. 빈곤아동 지원시설의 운영자, 학부모 단체, 아동·청소년 단체 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아동분야 업무를 3년 이상 전문적으로 담당하고 있거나 하였던 사람

<신 설>

조에 따른 교원의 자격을 갖춘 사람

나. 서울특별시교육청 또는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소속된 공무원으로서 아동 관련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하고 있거나 담당했던 사람

2.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 아동 분야에 관한 -----
--

3.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 면허를 소지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

----- 아동복지시설 또는 아동복지 관련 단체에서 아동 분야 -----
----- 담당했던 -----
--

5. 「국가공무원법」 제2조제2항 제2호에 따른 경찰공무원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2

<신 설>

4. (생략)

④ (생략)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8. (생략)

<신 설>

항제2호에 따른 자치경찰공무원으로 3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아동복지학, 사회복지학 또는 심리학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아동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7. (현행 제4호와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2조(위원회의 기능) 서울특별시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1. ~ 8. (현행과 같음)

제3조의2(사례결정위원회) ① 위원회는 제2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와 제8호의 사항에 관한 심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소속으로 사례결정위원회를 두며, 사례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본다.

② 사례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사례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 소속 4급 이상 공무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사례결정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3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사례결정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에서 정한 위원회의 규정에 따르고,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한 명을 두며, 간사는 시 아동청소년담당관이 되고, 서기는 아동복지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② (생략)

제10조(간사 등) ① -----

-- 가족담당관-----

-----.

② (현행과 같음)